경상남도공고 제2022-1437호

2022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계획 공고

우리 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「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제17조에 따라 전 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8월 29일

경상남도지사

1. 신청자격

-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①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②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
-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·전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거나,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 지원 또는 공연·전시시설 운영이 1년 이상이어야 함.
- 법인의 경우 예술단, 공연장, 미술관,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.
- 공연장 또는 예술단 간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연장 또는 예술단 중 하나의 창단,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.

2. 신청서 배부와 접수

- 공고기간 : 2022. 8. 29.(월) ~ 9. 16.(금)
- 신청서교부 : 경남도청 홈페이지 "고시/공고" 란에서 신청서 내려 받기
 - ※ 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gyeongnam.go.kr/
- 접수기간 : 2022. 9. 12.(월) ~ 9. 16.(금)
 - ※ 공휴일은 제외하고 18:00까지 접수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도 9. 16.(금)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
- 접 수 처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1층 문화예술과

3. 제출서류

-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신청서 1부(붙임 참조)
- 법인·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
- 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(해당 법인·단체에 한함)
- ○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「공연법 시행령」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 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
- 최근 2년간의 조직·인력(상근 임직원, 단원, 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전문인력) 운영현황 자료 1부
- 사업계획서 1부
- 사무실 임대차계약서(부동산매매계약서) 및 건축물대장 각 1부

4. 지정방법 :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사・결정

- 지정(심사)기준
 - 조직·인력 운영의 적정성, 재정 운영의 건전성, 공연·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· 전시시설의 운영 실적, 공연·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 종합적 평가

5. 지정 결과 발표

-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(2022. 11월 중 예정)
 - ※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지정시 혜택

- 전문예술단체 **지정기부금 단체 인정** : 전문예술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- ※ 2018년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제적격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함
- **기부금 공개모집 허용** :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적용 제외
-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** :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%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
- 상속세 및 중여세 면제 :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
- 「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제20조에 따른 경남도의 지원 등

7. 유의사항

- 신청서 작성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.
- 기 지정받은 법인·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신청법인·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8. 문의처

○ 경남도청 문화예술과(☎ : 055-211-4525, E-mail : thfthf2@korea.kr)

첨부 :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신청서 1부.

전문예술법인 · 단체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[]에는	해당되는 곳에 √표	를 힘	나다.												(앞쪽)
접수번호						7	접수'	일								
	법인(단체)명															
	소 재 지									(전호	화번호	:)
신청인	대표자 성명	(한 (한								생년월 (외국인		번호)			
	대표자 주소															
	신청구분		[] {	전문예술법	인					[]	전문예술단	·체		
신청 내용	예술단·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															
	(예술단 등)									(전화변	번호:)
	법인 • 단체 목적사업															
	법인 • 단체 성격	[] 재단법인				[] 사단			법인			[] 임의단체		단체		
	법인 • 단체 설립 등 기준일	설립 (창단 공연	십연월일 단 또는 개관 ▶ 전시일)	ŀ				다등록번호 연월일)					인전환일 기 연월일)			
	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	복 식 ①	자산		부채			자본			최근 수 ^c			최: 1년 비:	<u> </u>	
법인	※① ② 중 해당기재 ※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	단 식 ②	수입							지	출		'			
•	규 모	_	술단 항목		명세	-	공연	장 항목		명세		전.	시 관련 항	목	명세	
⊏ L÷II	※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	전	성용연습실		m²	공		등록번호 날짜				잔	선시장 규모			m²
단체	이답시고	전용사무실 상근임직원 수			m² 명		객석수 또는 바닥면적(㎡) 상근임직원 수		석 m²		전용사무실				m²	
현황										명		상근임직원 수		ſ	명	
			전임단원 수 후원회원 수		명 명		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후원회원 수			명 :			전문인력 고용인원		ļ	명
												후원회원 수			명	
		ュ				ュ						ユ				
		밖 의				밖 의						밖 의				
		명				명						명				
		세				세						세				

 공연	연 도	제 목	기 간	장 소 명 (객석 수, 전시면적)	일수 및 횟수	관객 수	유 료 관객 수
• *!!!	년						
전시							
등							
실적	년						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 •단체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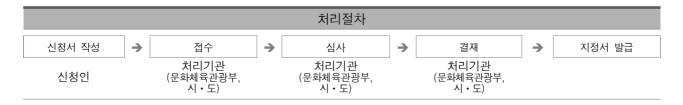
경상남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.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·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·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5. 사업계획서 1부 6. 사무실 임대차계약서(부동산 매매계약서) 및 건축물대장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

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
1. 신청인란

- 법인(단체)명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.
- 전화번호,e-mail에는 단체의 전화번호,e-mail를 기재하되, 연락가능한 번호,e-mail로 기재합니다.
 - (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)
- 대표자 성명에는 한글 및 한자로 각각 기재하고,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.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성명을 한글과 영어로 각각 기재하며,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. 휴대폰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
2. 신청내용란

- 신청구분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일 경우 전문예술 법인에 체크하며, 그 외일 경우는 전문예술 단체에 체크합니다.
 - ※ 2011, 11, 25,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예술단, 공연장 등이 별도의 명칭으로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기재하고, 그렇지 않으면 법인(단체)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.
- 예술단, 공연장 등이 별도로 있을 경우 예술단, 공연장의 소재지(도로명), 연락처를 기재하고, 전화번호도 기재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(단체)의 소재지, 연락처를 그대로 기재합니다.

3. 법인·단체 현황란

- 법인·단체 목적시업에는 정관(회칙)에 명시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.
- 법인·단체 성격에는 비영리재단법인일 경우 재단법인에, 비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사단법인에 체크하고, 그 외에는 임의단체에 표시합니다.
- 법인·단체의 설립등 기준일에는
 - ·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일을 기재하고, 단체일 경우 단체 결성일을 기재합니다. 단체의 결성일을 모를 경우 단체의 최초 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 창단 또는 개관 공연·전시일을 기재합니다.
 - · 사업자등록번호와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기재합니다.
 - · 법인전환일에는 단체로 결성 후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법인설립허가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합니다.
- 예술단 등의 재무현황에는 복식회계일 경우 복식란에, 단식회계일 경우에는 단식란에 기재합니다.

※ 2020년도의 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단, 2021년 설립된 법인·단체일 경우 공고일 현재로 작성

- · 복식부기에는 자산, 부채, 자본을 각각 기재합니다. (자산 = 부채 + 자본). 최근 1년간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합니다. ※ 결산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되, 결산보고서가 없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- · 단식부기에는 최근 1년간의 수입 및 지출을 기재합니다.

- 규모에는

- · 예술단이 있을 경우 예술단 항목에 예술단의 전용연습실 및 전용사무실 면적, 상근임직원 수, 전임단원 수, 후원회원 수를 기재합니다.
- ·공연장이 있을 경우 공연장 항목에 공연장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, 객석수 또는 바닥 면적, 상근임직원 수, 무대예술전문인고용인원, 후원회원 수를 기재합니다.
- · 전시장이 있을 경우 전시장 항목에 전시장 규모, 전용사무실 면적, 상근임직원 수, 전문인력 고용인원, 후원 회원 수를 기재합니다.

4. 공연·전시 등 실적란

- 연도는 직전 2년을 기재합니다. (예, 2021년 지정신청일 경우, 2019년 및 2020년을 기재) 다만, 2019. 8. 29. ~ 2021. 8. 30. (공고일 현재까지의) 3개년 기재 가능 ※ 2년이 되지 않은 법인·단체일 경우 설립이후 연도를 기재합니다.
- 제목은 해당연도 공연, 전시 등의 제목을 기재합니다.
- 기간은 해당연도 공연, 전시 등의 기간을 기재합니다.
- 장소는 해당연도 공연, 전시 등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객석 수, 전시면적도 같이 기재합니다.
 - ※ 공연일 경우 객석수를 기재하고, 전시일 경우 전시면적을 기재합니다.
- 일수 및 횟수는 공연, 전시 등의 실제 일수와 횟수를 기재합니다.
- 관객수는 유료, 무료 등 관람한 모든 관객의 수를 기재합니다.
- 유료관객 수는 실제 티켓을 구매하여 관람한 관객의 수를 기재합니다.

5. 제출서류 안내**(※필수서류)**

-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(변경) 신청서
-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.
 - ☞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, 회칙, 약정 또는 기타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**기본 운영 규정**을 제출
- 고유번호증 사본 1부.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공고일 전에 등록하여 유효한 사항만 인정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_<mark>공고일 전에 등록하여 유효한 사항만 인정</mark>
-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·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·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
 - ☞ 2019~2020년 법인·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자료 제출 다만, 2019. 8. 29. ~ 2021. 8. 30. (공고일 현재까지의) 3개년 기재 가능
 - ☞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립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자료 제출
- 사업계획서 1부

6. 기타 심사에 참고할 서류(1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)

- 대표자 또는 감독·기획자 등 전문인력 약력
- 단체의 최근 2년 동안의 국내외 수상실적
- 단체의 기획(정기)공연 및 기획(정기)전시 실적
- 단체의 해외 공연 및 전시 실적
- 재능기부, 무료공연(전시) 등 사회 공여 활동 실적